0 財 大 (韓民国 産 及び 請 求 権 K 関 す る 問 題 0 解 决 並 Ç K 経 済 協 力 K 関 す る 日

本

国

٤

(略称) 韓国 ک 0 請求 権 • 経 済協 カ 協 定

٤

Ø

間

Ø

協

定

昭 昭 昭 昭昭昭 昭 和 和 和 和 和 和 四 四 四 四 껃 四 + + + + + + 年十 年 年十二月 年十二月 年 十二月 $\dot{+}$ 二月 六 月二 月 十八日 十八日 + ++ + 29 四 日日 日 日 公 ソウルで批准 批 批 玉 東 布 准 昭和四十 准 会承 京で 及び効 書認証 Ø 閣 認 議 名 力発 年 決 条約第二七号) 書 定 2 交換

生の告示

和 四 十年 十二月 + 八 日 力発 生

財 批 紛 次 准 及び 効 徴の の 利 力発 及び 経 解 生 利 済協力、 益並び 決 K 合同委員会の設置及び実施 請 求 権に 関 す る問 題 の 解 取極 決 Ø 結 ------ 二九三 `` !

末 第 第 第 第 前 四 三 二 条 文 条 条 文

目

(__)

清算勘定残髙の返済	第 第 前 二 条 李
、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 定書三○六	第二議
実施手続及び細目	第七条
実施のための措置及び便宜供与、租税の免除、再輸出の禁止等	第六条
使節団の設置、任務、特権及び免除	第五条
日本国政府の支払	第四条
契約の締結、認証及び商事仲裁並びに契約によらない供与	第三条
と通常貿易及び外国為替の負担との関係	
生産物の定義並びに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	第二条
年度実施計画の作成及び決定	第一条
	前文
で	目

韓国	日本側書	○協定第一	韓国 IV 側 書 使		II 契		日本側書	目	〇 第一議	末 第 第 第 六 六 条 条 条
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三	簡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〇協定第一条160の規定の実施に関する交換公文・・・・・・・・・・・・・・・・・・・・・・・・・・・・・・・・・・・・	簡	「1~~ 和 目	約の細目	施計画の細目	簡	次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京で議定書の実施細目に関する交換公文・・・・・・・・・・・・・・・・・・・・・・・・・・・・・・・・・・・・	III

韓	日商本	〇 商 業	2 1	〇 合 意	8	7	6	5
韓国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上の民間信用供与の容易化及び促進三三書簡		送及び保険に関する協議	昭和四十年六月二十二日 東〇合意された議事録	(D)貸付けの実行日 ····································	国	(D)随意的役務	外国為替上の追加負担
(五) 三	ー ー - ⁻ 東京で	一 九	九九 ! ジ	東 ^九 京 で	八八	七-	七七	六 大

日

文

韓民国との間 並びに経済協力に関 一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 の協定 する日本国と大 題の解決

財産

0 次のとおり協定した。 両国間 間の請求権に関する間題を解決することを希望 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並びに両国及びその国 本国及び大韓民国 の経済協力を増進することを希望して は L 民

(a) 現在において千八十億円(一〇八、〇〇〇、CC

第 条

日本国は、

大韓民国に対し、

の供与は、現在において百八億円(一〇、八〇〇) 与するものとする。各年における生産物及び役務 効力発生の日か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無償で供

日本国の生産物及び日本人の役務を、この協定 ○○○、○○○ドル)に等しい円の価値を有する ○、○○○円)に換算される三億合衆国ドル(三○○

0

を限度とし、各年における供与がこの額に達しな ○○○、○○○円)に換算される三千万合衆国 ル(三○、○○○、○○○ドル)に等しい円の額

与

일본국과 대한 민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무게의 하고라 경제 협력의 क् क् क्

일본국과 대한 민국은

수 수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 나 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연간 민구 구원

유 간의 경제 협력을 중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일본국은 대한 민국에 대하여.

으로 환상되는 3억 아메리카 합중국 불 (\$300,000,000)교 (a) 변재에 있어서 1번 80억 다 다 연2 (108,000,000,000%)

3천만 아메리카 **합중국 불** (\$30,000,c00)**과 동등한 일본** 있어서 1박 8억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동등힌 일본 엄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응역을, 본 협정의 토막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길컥 흔 đ٤ (10,800,000,000성)으로 황산되는

쉼의 약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약수에 미달

度額は、両締約国政府の合意により増額されると関額されるものとする。ただし、各年の供与の限かつたときは、その残額は、次年以降の供与額に

二○○、○○○、○○○ドル)に等しい円の額に○○、○○○円)に換算される二億合衆國ドル() 現在において七百二十億円(七二、○○○、○とができる。

とする資金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必要付けを各年において均等に行ないうるために必要な付けな、日本国の海外経済協力基金により行な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行なうものとする。この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行なうものとする。この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行なうものとする。この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行ならものとする。この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て行ならものとする。このら十年の期間にわたつで行ならものとする。とする資金を確保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必要付けを各年において均等に行ないうるために必要な日本である。

展に役立つ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前記の供与及び貸付けは、大韓民国の経済の発な措置を執るものとする。

議機関として、両政府の代表者で構成される合同委項について勧告を行なう権限を有する両政府間の協両締約国政府は、との条の規定の実施に関する事

員会を設置する。

 $\overline{2}$

되었을 때에는 그 잔왜은 차년 이후의 제공왜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왜은 양 제약국 경투의 합의에 의하여

중액될 수 있다

(ь) 현재에 있어서 7박 20억 일본 영 (72,000,000,000명)

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 합중국 볼 (\$200,000,000)화동등한 일본 원의 약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희의 차관으로서, 대한 민국 정부가 오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 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사관을 본 현정의 토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길처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 경제 협력 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군동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겨 제공 및 차관은 대한 민국의 경제 발견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 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 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日

ĸ

サ

要な取極を締結するものとする。 締約国 第二条 政府は、 との 粂

3

の規定

0

実 施の

ため、

必

1 Ø 0 間 財 両 産、 締 0 約国は、 請 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 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 両 締 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 約国及びその国民 九月

る。 全か の平和 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 条約第 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 四 (a) 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 完 ح

S までにそれぞれの となつたものを除く。 との条の規定は、 締約国が執つた特別の措置の対象 次のもの(この協定の署名の日 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

な

미치는 것이 아니다.

2

(a) 益 国に居住し 日からとの 方の 締 約 たことがあるも 協定の署名の日までの間に他 国の国民で千九百四十七年八月十 Õ の財 産 権 利及び 方の締 利 約 五

(b)

方の

締約

国及びそ

の国

民

の財

産

益

であつて干

九

百四十五

年

八月十五日

以 権

公後に 利及

け 利

る通常の接触の過程にお

いて取得され又は

他 方の お Ü

約

国

Ø

暜

轄

0

下には

いつたも

国

との

清

求権

経済協力協定

心 の天 で 체결한다. 무하는 원 はずる ďΨ <u>₹</u> 0

あなれ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

관리 및 이익과 양 제약구은, 양 제약국 및 ٥ç 체약구 및 μ μ 中巴 中 간의 청구권이 관한 (법인을 포함함)의

. 삼 산

하두구코의 문제가, 1천 9박 51년 9월 8일에 샌드런시스코우 시에서 서명된 4年 4年 보 4조 (ㅁ)의 구정된 것을 부합하여

제약국이 취한 특별 완건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4 ^포의 규정은 다음의 것 (본 협정의 서명일7차지 **각**기 조치의 대상이 刀이 된다는 ď 기울 제외한다)에 영향을 겨울 확인한다

15일부터 본 협정의 일방 제약국의 국민으로서 1전 9봬 47년 8월 서명일까지 사이에 탁방 체약국에

겨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펌티 b) 일탕 체약구 및 구 4명의 재산. ¥۵ ٠ د qŦ. R

)<u>, u</u> _0 10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學 으로서 1천 9택 45년 8월 る 6万 育 \$으 오 취득되었고 뇐 150 의 후 일 또는 타방 체약국의 있으મ의 * 상일

二九五

3 は あ 方 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 定 及びその国民の財産、 つ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 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 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一方の締約国 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 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この協

off

<u>* 13</u>

***** 13

決紛争の解 1 する。 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 と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間 の紛

2 締約国のうちいずれかの国民であつてはならない。 三人の仲裁委員からな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 仲 ら三十日の期間 意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 が当該期間の後の三十日の期間内に合意する第三の Ø 政 は、 するものとする。 裁 仲裁委員と、こうして選定された二人の仲裁委員 (府から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日か 1 委員又は当該期間内にその二人の仲裁委員が合 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他方の締約 の規定により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紛 内に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各 ただし、 第三の 仲 裁 仲裁委員との 委員は、 んめ付 国の 人 両

아니타다

q.

<u>보</u> 2일

/ 구

48 48 48

양 체약국 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주짓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타방 제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지와 일방 제약국 그 국민의 학방 제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경으로서 μ 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연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때的 국민의 재산. 경디 및 이익으로서 본 2의 구경에 따로는 겨울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다 0곳 대 보면임

우선 외고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E 합성의 학식 및 실시에 관한 **م**ې 부원론 여

구성되는 중재 위원되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건부가 지명하는 제 3의 중재 위원파의 3인의 중재 위원으로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 3국의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게 3의 중재 위 일명하는 1인의 중재 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 위원이 하는 공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가 제약국 정부가 채약국의 정부가 타방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 1의 구경에 의학여 해결할 수 없었면 본쟁은 어느 일방 末

構成されるものとする。 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をもつて が三十日の期間内に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名する各 一人の仲裁委員とそ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

たときは、仲裁委員会は、

両締約国政府のそれぞれ

しくは第三国について当該期間内に合意されなかつ

委員を任命しなかつたとき、

又は第三の仲裁委員若

3

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当該期間内に仲裁

w

4 会の決定に服するものとする。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

第四条

|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 この協定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 との協定は、 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批准 書は、

文 めに正当な委任を受け、この協定に署名した。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 各自の政府からこのた

|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

日本国のために

椎名悦三郎

高杉

韓国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위엄으로 구성한다.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과 1인의 중제 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게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게 3의 좋재 위원되는 양 제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3국에 대학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 일명하지 아니 하였을 때, 또는 게 3의 중재 위엄 어느 일방 제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좋재 위원을 4

교생의 부만다. 유치 子子の 본 조의 구정에 의기한 증재 위원회의

¥

서울에서 교환한다. rjec 별정은 비존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이

본 협정은 비준서가 고환된 날드부어 흐먹을 발생한다.

위입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상의 증겨로서, 하기 대표는 **가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일본어 및 한국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F5961 62,229 보오코오에서 동동이 정본인

大韓民国のために

金 李 東東祚元

일본국을 위하여 権名党三郎 高杉 晋一

二九八

대한 민국을 위하여

東元 東茶

文

第

議

定

という。 K 関 財 する日本 産 及び に署名するに当たり、 請 ・国と大韓 求 権 K 関 す 民国との る問 題 間 0 の協定 下 解 名 決並 たは、 7 (以下 各自 ĸ 経 済協 Ø 政 協

拹 K から正当 定し 関 協 な委任を受け、 定 の不可分の 協 部と認められる次の 定 第 条 1 (a) 0 規定)規定: Ø 実

施 府 定 五

약 오

草草

を

た

計 日 本 玉 が 第 供与 条 す る生 産 物及び役務 を定める年度実施 府

定成計年

及画度 びの実

决作施

K n ょ るものとする。 画 り作 (以 成され、 下 実 施計 両 画 締 約 という。 国 政 府 間 Ø 協議 は、 K 大韓民国政 より決定さ

2 1 国 合意 |と大韓 日 日 す 本 本 国 るその 囯 が供 民 0 国 主 논 産 他 与 す 物 0 Ø 間 及び 生 る生 産 0 日 産物 物とする 本 は、 人の役務 資 (本財 の供 及び 与 は 両 害さ 政 日 府 ħ 本 が

と為及通の及に定生

の替び常供び生義産

関負外貿与役産並物

係担国易と務物びの

1 玉 第 5 \mathcal{F}_{1} 課されな ように、 条 1 第三条 0 使節 S か ように、 つ、 团 又 外 国 は 通 為替 常の 大 実 み施され 韓 上の 貿易 民 \mathbb{R} 追 るもの が 政 加 著 府 しく阻 Ø Ø とする。 負 認 担 可 を受け が H

本

본 후묘 涯

아니 하도록 싫시 된

4

仲及結契

び事証締

は

施

画

K

従

S

生

産

物

及

75

を

得

ける

裁び 並商認の

た た

め、 者

日

本国 実

又はその

支配

重

á 第

H

国 務

0

法 取

人と

나 다

찬

실시 계획에 따다라 생산물

×α

하 13 6

취두 하기

国

との

請

求 民 計

権

経

済協力協

定

議 本 役

定

무누부일 Ġ. 무 (나 똢 e۷ ** Ł おおれる ᅉ

¥

••

6

있으나 하나 <u>국</u> 6곡 하라 등 화합 두 **가자의 정부로부터** 발전 (이학 "발전"이다 eΣ ca ot 도 (학 (학 숃 LO.

. 우 불가분의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 및 σχ ææ in in 게 1조 1 (a)의 구정의 실시에 관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구정의 후

Œ

علاه

ഉ

(이학 "실시 계획"이탁 함)은 대한 민국 정부에 의하여 ٥ę 체약국 정부 간의 오 빠 18 하 ю 9 oΣ Ť 결정된다. (a CB 企上

작성되고

냞

나 6명 바 (*) 기타의 생산물로 한다. 일본국의 생산물 및 간의 홍상의 무역이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u>ب</u> 타일 있으시의 일본인의 면자의 사람되지 아니 하드 中中 바 자본 보 15 06 06 하늘 보고 보고 하는데 » ¤ 유 有中山區

6 上 以 中 4 × 댿 中口 보 **후** 수

¥

7

二九九

接に契約を締結するものとする。

1(3)及びとの議定書の実施のため行なう取極の担 1(3)及びとの議定書の規定、川両政府が協定第一2 1の契約(その変更を含む。)は、川協定第一

日 するものであるかどうかについて認証を得るため、 n 並びに川その時に適用される実施計画に合致しなけ 本国政府に送付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認証 ばならない。 (3)及びこの議定書の実施のため行なり取極 とれ らの契約は、 前 記 の基準に 0 合致 規定 は 条

ところに従つて認証を得た契約は、以下「契約」と十日以内に行なわれるものとする。この項に定めるその勧告は、合同委員会がその契約を受領した後三合同委員会の勧告に従つて処理されるものとする。の契約は、協定第一条2の合同委員会に付託され、められた期間内に認証が得られなかつたときは、そめられた期間内に認証が得られなかつたときは、そ

ければ Ø 裁 政 て生ずる紛争が一方の 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ものと 仲裁判断 委 府間で行なわれることがある取極に従つて商事 すべての契約 員 ならない。 会に解決 を最終的 のた は 両政府は、 なものとし、 め付託される旨 その契約から又はこれ 契約当事者 正当になされたすべて かつ、 の要請により、 0 規定を含まな 執行すると に関連 仲 両

3 いすう。

"계약"이라 한다

위하여 일본 국민 또는 그가 시배하는 일본국의 법인과 직접 개약을 제결한다.

条

회부되어 합동 위원회의 경고에 따라 커리된다. 못할 때에는 그 개약은 혈점 제 1조 1 (a) 🗓 함동 위원회가 동 14일 이내에 행하여 진다. 받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 송부된다. 저약은 건기 기존에 합지되는 것인가의 (3) 당시에 걱용되는 실시 계획에 합체되어야 한다.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며 인종을 받은 계약은, 이후) 및 본 의정서의 실시를 위하여 행하는 약정의 10 rfec 늄 **のよれる すれる** 계약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누의 변경을 포함함)은, 수정의 기간 (2) 왜 정부부 29 여부의 대학역 **조** 푼 아 다 다 다 0 인종은 σ¥. Ξ **하하하하** 민장은 o X a M <u>¥</u> ofer 日本なる <u>•</u> 40 14 은 수 아 아 出土と 받 ¥ <u>)+ 11</u> 14 C۴

原則として十四日以内に行なわれるものとする。

定

3 모든 계약은, 그 계약으로부터 또는 개약과 관련하여 약기되는 본장은 일방 계약 당사자의 오청에 의하여, 양 경부 간에 탨하여 길 약정에 따라 상사 중재 회원회에 해결을 위하여 회부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양 경부는 경당하게 이루어진 모든 중재 판단을 최종적인 기으로 하고 또한 질행될

00

使節団は、

協定第一条1a)及びこの

)議定書

1の実施

<u>•</u>

る。

韓国との請求権・

経済協力協定

第一 議定書 を任務とし、

その任務には次の事項を含むものとす

府の 支払 払

契約 る。 1の規定にかかわらず、 によ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場合は、 第四 条 両政府間の合意により行なうことができ 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は、

4

する。

1 てるための支払を、 府 の認可を受けた者が契約により負う債務並びに 4の規定による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の費用に 日 本国政 公府は、 第五 第七条の規定に基づいて定める 一条1の 使節団又は 大韓民国政 充 前

手続によつて、行なりものとする。との支払は、 本円で行なりものとする。 日

2

日本国は、

韓民国に供与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 産物及び役務を、協定第一条1aの規定に従い、 五条

大

より、その支払を行なつた時に、その支払に係る生

1の規定に基づく支払を行なうことに

1 という。)を日本国内に設置する。 大韓民国政府は、 同政府の使節団 (以下「使節団

> ∱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의거 실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4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산물 및 용역의 체공이 계약에

œ.

권부 간의 합의임

契

Ł

다 다 계약 없이 실행할 수 있다.

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 계공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을 7조의 구정의 의사하여 정하는 결차에 따다며 했한다. 인가를 받은 자가 계약에 의하여 지는 채무와 일본국 경부는, 게 5조 1의 사절당 또는 대한 민국 ĊŁ þ Ē

可可存

시 바 이의 ^지불은 1조 1 (a)의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에 제공한 것으로 경주한다. N 행 한^도대에, 그 지불이 된 생산물 및 용역을 협정 일본 없으로 한다. 일본국은 1의 구경에 의거한 지불을 함으로서

(1) (1) (1) 대한 민국 정부는, 동 정부의 사절단 (이약 "사결단" 일본국 내에 설치한다.

임무로 하며, 그 임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사귈 당은 oy. <u>¥</u> 1 🚣 1 (a)) c 4 可不配可 실식을

≡0|

(a) 대한 민국 정부가 작성한 실시 계획의

누구하

韓国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第一議定書

(a)

への提出

大韓民国政府が作成した実施計画の日本国政府

大韓民国政府のための契約の締結及び実施

(b)

凹の契約及び大韓民国政府の認可を受けた者の

の送付 締結する契約の認証を受けるための日本国政府へ

3 かつ、もつばらその目的に使用される使節団の日本 玉 使節団の任務の効果的な遂行のため必要であり、

ことがある他の場所に設置する。 |における事務所は、東京及び両政府間で合意する

使節団は、暗号を使用することができる。使節団に 使節団の事務所の構内及び記録は、不可侵とする。

장수에 설치할 수 있다.

属し、かつ、直接その任務の遂行のため使用される

不動産は、不動産取得税及び固定資産税を免除され 団の所得は、日本国における課税を免除される。 る。使節団の任務の遂行から生ずることがある使節

上の援助で使節団の任務の効果的な遂行のため必要 除される。 入について又は輸入に関連して課される課徴金を免 使節団が公用のため輸入する財産は、関税その他輸 とされるものを日本国政府から与えられるものとす 使節団は、 他の外国使節団に通常与えられる行政

> 심부으의 보충 (b) 대한 민국 정부를 의한 계약의 채결

ÞП

企上

자가 제결하는 계약의 인공을 밥기 위한 일본국 정부에의송부 (c) (b)의 계약 및 대한 민국 정부의 인가를

있어서의 사무쇼는, 토오코오 및 양 경부 간에서 합의하는 기학 또한, 오토지 그 목격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절단의 일본국에 **사건**단의 임무의 **토과것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및 고정 자산세가 면제된다. 사절단의 임무의 수행으로부터 그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 취득세 사결단은 암호를 사용할 수 있다. 사결단에 속하며 또한 직접 사귈단 사무쇼의 구내 및 기록은 불가침으로 한다.

巴利巴牛. 된다. 사절단이 공격 목격으로 수입하는 재산은, 금세 기탁 수입에 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깅금이

발생되는 사절단의 소득은, 일본국 약 있어서의 과제가 면제

행정상의 염조로서 사절단의 입무의 토로적인 수행을 위략이 사절딘은, 타 외국 사절단에 통삼적으로 부여되는

6 大韓民国の国民である使節団の長、使節団の上級

職員二人及び3の規定に従つて設置される事務所の

られる外交上の特権及び免除を与えられる。 長は、国際法及び国際慣習に基づいて一般的に認め 使節団

により増加することができる。

たときは、前記の上級職員の数は、

両政府間の合意

の任務の効果的な遂行の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

7 住 の遂行について受ける報酬に対する日本国における 大韓民国の国民であり、かつ、通常日本国内に居 していない使節団のその他の職員は、自己の職務

ろにより、自用の財産に対する関税その他輸入につ いて又は輸入に関連して課される課徴金を免除され 課税を免除され、かつ、日本国の法令の定めるとこ

る

8 裁により解決されなかつたとき、又は当該仲裁判断 が履行されなかつたときは、その問題は、最後の解 契約から若しくはこれに関連して生ずる紛争が仲

과집금이 면제된다.

続上の目的のためにのみ、使節団の法務部長の職に 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必要とされる訴訟手 決手段として、契約地の管轄裁判所に提起すること 自己の事務所において訴状その他の訴訟書類の送達 ととができるものとし、そのために使節団における ある者は、200の契約に関し訴え、又は訴えられる

> 직원 2명 및 3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소의 장은 국제**법** 필요트 한 기울 일본국 정부로부터 부여 발논다. 대한 민국의 국민인 사절단의 장, 사결단의 상급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기 상급 직원의 수는 양국 경부 면제를 밥는다. 사결단의 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제 관습에 따라 일반격으로 인정되는 외교상의 특권 및

간의 합의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7 대한 민국의 국민으로서 용상 일본국 내에 겨주하고

관시, 기탁 수입에 대학여 또는 수입에 관면학여 부과되는 일본국의 법병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용 재산에 대하여 받는 보수의 대한 일본국의 있어서의 과제가 면제되며 또 한 있지 아니하는 사귈단의 기탁 직원은, 자기의 직무 수행상

있는 자는 2 (b)의 계약에 콤하여 제소하며 또는 용소될 소송 결차상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사절단의 법무**부장의 경애** 관할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필요함 아니한 때에는, 그 문제는 최후의 해결 수단으로서 계약지의 의한 해결을 보지 못한 더해 또는 등 중재 판단이 이행되지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분쟁이 중재에

韓国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第一議定書

ただし、

訴訟

費

行なつた最終の裁判 られてはいるが、 及び6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不可侵及び免除を与え 用の担保を供する義務を免除される。 を受けることが できるものとする。 前記の場合において管轄裁判所が を 使 節団を拘束するものとし 使節団 は 4

9 その任務の遂行のため使用される土地及び建物並 て受諾するものとする。 最終の裁判の執行に当たり、 使節団に属し、 か 。 つ、 CF

を受けることはない。 第六条

K

!その中にある動

産

は

S か

なる場合にも強制執

行

μ

政 府 は

生産物及び役務の供与が円滑かつ効

果

1

襾

禁再税供及め実 止輪の与びの施 等出免、便措の の除祖宜置た

2 お X V 的 に行 ける滞在に必要な便宜を与えられるものとす の大韓民国への入国、 て必要とされる日本国民は、 生 |産物又は役務 なわれるため必要な措置を執るものとす の供与に関連して大韓民国内 同国 か その らの 出 作業の遂 一国及び 同国 行 る。 ĸ る。 Ø K た お

3 除される。 から生ずる B 本国 の国民及び法人は、 所 得につき、 大韓民国に 生 産物又は役務 ょ け ź 课税 Ø 供与 を免

4

日

本国により供

与される生産物

は

大韓

民

K

Ø

頟

域から再輸

出されて

はならな

따라, 불가침 및 당보 제공 의무가 면제된다. 7 ት 타의 소송 거류의 송달을 접수할 수 보이면 nde 위하여 사귈단의 자기 사무소에 있어서 소장 면제가 부여되다. 건기 경우의 있어나. 사절단은 4 후 »¤ 6일 권하는

동산은, 어때한 경우에 있어서도, 강제 집행을 밟지 아니한다. 재판소가 해한 최종의 재판이 사절단을 구속하는 것으로 수막한다. 후 9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안에 있는 최종의 재판 집행에 있어서, 사절단에 속하며

¥ 6 M

0 행하여 지도록 하기 의하여 œ. 정부는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이 원활하고 효과격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본 국민은, 그 대한 민국에의 입국, 동국으로부터의 생산물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대한 민국 4 작업 수 했을 의학교 <u>> 0</u> 동국에 있어 돈

호

체재에 필요한 면의가 부여된다.

과색가 면색된다 제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 하누구의 민누 ¥¤ 는 판 삼산물 4 민국에 있어서의 opo 년 18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물은 4 바이 900

三〇四

び法人に対する差別的措置を、

直接又は間接に執ら

ないものとする。

ものとする。

による生産物及び役務の調達についても適用される

との条の規定は、協定第一条160に定める貸付け

政府間で協議により合意するものとする。

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 日本国のために

椎名悦三郎

高杉

金 東

東

大韓国民国のために

元

末

文

第七条

との議定書の実施に関する手続その他の細目は、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この議定書に署名した。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

의본국을 의하여

点だ 権名党三郎 瑞一

대한 민국을 위하여

金 東 往

韓国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第一議定書

부터 재수출 되어서는 아니 된다.

5

いずれの一方の締約国の政府も、

日本国により供

与される生産物の運送及び保険に関し、公正かつ自

由な競争を妨げることがある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

물의 수송 및 보험에 관하여,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을 5 어느 일방 제약국의 정부도, 일본국이 제공하는 생산

방해하는, 하방 체약국의 국민 및 범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하지 아니한다. 6 본 초의 규정은 협정 제 1조 1 (b)에 정하는 차관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조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의정서의 실시에 관한 절차 기탁의 세탁은 양 정부

両

4

간의 범의에 의하여 밝의한다.

이상의 중거로서, 하기 대표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22일 토오쿄오에서 동동히 정본인 일본어

및 한국어로 본서 2봉을 작성하였다.

三〇五

文

第二議定書

と認められる次の規定を協定した。 という。)に署名するに当たり、下名は、各自の政府 から正当な委任を受け、さらに、協定の不可分の一部 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以下「協定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

第一

済残清 高の勘 返定

力発生の日から十年の期間内に、次のとおり分割して ント(四五、七二九、三九八・○八ドル)を協定の効 ある四千五百七十二万九千三百九十八合衆国ドル八セ より両締約国政府間で確認されている日本国の債権で 残高として千九百六十一年四月二十二日の交換公文に 大韓民国は、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清算勘定 この場合においては、 利子を附 0

七 万三千合衆国ドル 第十回の年賦払の額 第一回から第九回までの年賦払の額 (回**、** 四百五十七万二千三百九十八 五七三、〇〇〇ドル) 各年四百五十

さない。

返済するものとする。

合衆国ドル八セント(四、五七二、三九八。○八ドル

前条の各年の賦払金について大韓民国の要請があつ

賦払金に

天公司犯工

받고, 또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인정되는 다음의 규정애 함에 있어서, 하기의 대표는 갑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일본국과 대한 민국 간의 재산 및 청구관에 관한 문제의

¥

합의하였다.

9십 8 아메리카 합중국 불 8센트 (\$45,729,398,08)를 협정의 변체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이자로 한다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분합하여 으로서 1961년 4월 22일자 교환 종문에 의하여 양 제약국 경부 간에 확인되어 있는 일본국의 재금인 4천 5백 7십 2만 9천 3백 대한 민국은 일본국과 대한 민국 간의 청산 계정의 관약

아메리카 합중국 불 8센트 (\$4,572,398.08 7만 3천 아메리카 합중국 불 (화, 573,000) 1회부터 제 9회7차지의 연부높의 왜 - 매년 4백 5십 10회의 연부분의 왜 - 4박 5십 7만 2천 3백 9십

Þ

₹ 0 매년의 부불금에 대하여 대한 민국의 오ろ이 있을

œ

韓国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第二議定書

請 の 期 限

慣行を考慮し

て、

前条の規定による支払期日

が属

でする

관행을 그며하여

ĊŁ

は

日

本国

0

財

政上

Ø

¥

2조에 의한

유민한

をする

ㅎ목은 일본국의

圣记公司

仏払の

期年 日賦

(a)

の規定にかかわらず、

その金額だけ滅額されるも

役務の供与の額並びにその

条1個の規定による生産物及び

た

Ġ

のとみなし、

年の供与の限度額

は、

同条

減限請韓つ 額度と国い 額供のて の与要の Ø

条 1 (a) これにより、 たとき 規定による賦払金の支払が行なわれ この規定 ū その K 協定第一 よる生 安請 の 産 あ 物 つた金 及び役務 額

に相

当する協定 供与並びに前条

第一

경우에는.

μ

요청이 있은 금액에 상당한

67.

<u>)</u>

Õ

第三条

|のとする。

第一条にいり日

|本国

債権の額の返済に関.

Ļ

大韓

7

14 24

양막

第一

回

払 0

0

に行

な

Ġ

いて第 日

民国は、 の年賦

りものとし、 第二回以降 Ø を協定の効力発生

の支払期日と同 Ø 日 ま でに行ならものとする。 年賦払を各年にお

П

第二条の大韓民国政府の要請 匹 条

なわれるものとする。ただし、 本国の会計 当該支払期日に支払われるべき賦 年度が始 まる暦年の 第一 前年の十月一日まで 回 仏払金に の支払 つい (及び本 て行

<u>Х</u> ти â

일자에 지불하여야 할 부불금에 대하여 행하여 진다.

ĸ

日

についての要請は、 文の規定によることができない のとする。 大 韓民国の 五 要 請 は、 協定の効力発生の日に行な 第 条に 場 S 合の り各年の 第二回 賦 払金の全 Ø 支払) わ

n

る

¥

뜮

무무

S

왕왕곡한)의 무정의 의황 oфп M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약 및

부불금의 지불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의하여 협정

구정에 의한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과 권 조의

오자 圣

Þ

<u>¥</u> 1⊁

그 의된 다. 쌰 1 (a

1 (a)의 구경에 불구하고 그

몸 왜만큼

μ

₽4

제 1회의 연부분을 협정의 토릿 일본국의 재금의의 변재에 관하여. 발생일의 행하는

일자와 동일한 일자까지에 酂한다.

하고, 게 2회 이후의 연부불을 때년에 있어서

굨 五〇月

þ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혁년의 건년의 10월 1일 7가지에 당해

2회의 지불)에 대한 요청은 게 1회의 지분 (및 본문의 규정에 의할 수

育

발생일에 행막여진다.

우천은 본 1초 역부 연급한 배년의 부분급의

三〇七

不賦 払払 金の

文

末

の要請があつたものとみなす。

部 又は一部について行なうことができる。 第六条

わ その賦払金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第二条の大韓民国 の規定による支払期日までに行なわれなかつたときは、 いれず、 大韓民国の要請が第四条の規定による期日まで行な かつ、賦払金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が第三条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名は、この議定書に署名した。

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

건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할 수 있다.

행하여 지지 않고, 또 한 보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이 대한 민국의 요청이 재 4조의 구정에 의한 일자가지에

경우에는 그 부불금의 전부 또도는 일부에 대하여 제 2조에 따라 게 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불 일자가지에 행하여 지지 않았을

대한 민국의 오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본 외정서에 서명하였다.

및 한국어로 본서 2동을 작성하였다. 토오코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1965년 6솵 11일

무연

일본국을 위하여 権名悦三郎

나는 민구을 李本

捺

東

金

李

東

元

大韓民国のために

高杉

日本国のために

椎名悦三郎

(科

恒が

瑞儿

東

比

東

議定書第一条の年度実施計画(以下「実施計画」

両政府がその始期及び終期を合意す

という。)は、

2

実施計画の決定は、

原則として次のとおり行なわ

る年度について決定されるものとする。

H

れるものとする。

본관은 금인자 가하의 다음과 같은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금일 서명된 일본국과 대한 민국 간의 재산

"현생"이라 함)의 척 1 의생수 (이라 "의생수"라 함)의 연급 및 청구년의 관한 문제의 학교과 경치 협력의 관한 결정 (이학

両

제 7조의 구경에 의거하여 다음과 값이 합의할 것을 제외합니다. 하는 영광윤 가집니다. 일본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외정서

시스 보 보

대하여 결정된다. 함)은 양 정부가 그 시기 및 총기를 합의하는 연도에 의정서 제 1조의 연도 실시 계획 (이후 "실시 제회"이후

실시 개확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아 행하여 진다. a) 제 1년도를 제외한 과 연도의 실시 계획은 그 선부의 체출된다. 위하여 당해 연도의 실시 계획은 그 연도의 개시에 격용되는 연도의 개시에 앞서 결정된다. 이틀 앞서 ≯이도 60일 전에 혐의를 위하여 일본국

意することを提案いたします。 国政府が議定書第七条の規定に基づいて次のとおり合 う。) に言及する光栄を有します。 協定」という。)の第一議定書(以下「議定書」とい 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以下「 された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 書 簡をもつて啓上いた (第一議定書の実施細目に関する交換公文) 実施計 します。 本大臣は、本日署名 日本国政府は、

(b) (a) れる。 くとも六十日前に協 め当該年度の実施計 される年度の開始に先だつて決定される。 第一年度の実施計画は、 第一年度を除く各年度の実施計画は、 画は、 議のため 協定の効力発生の日 その年度の開始の少 日本国政府に提出 その適用 との

ケな た

N

さ

施計画は、

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日本

韓国との請求権・経済協力協定

第一

議定書の実施細目に関する交換公文

ら六十日以内に決定される。

との

ため 国

同年度の実 政府

か

M 提

出される。

掲げるものとする。 予定されている日本国の生産物及び日本人の役務を3 実施計画は、当該年度中に大韓民国による調達が

ができる。 4 実施計画は、両政府間の合意により修正すること

1 契約

の実施に関する責任は、議定書第五条1の使節団(2 議定書第三条2の契約(以下「契約」という。)の手続によつて締結されるものとする。

のとする。国の法人で、契約の当事者であるもののみが負うも国の法人で、契約の当事者であるもののみが負うもを受けた者及び議定書第三条1の日本国民又は日本

以下「使節団」という。)又は大韓民国政府の認可

商事仲裁機関をいう。した場合における他方の当事者が居住する国にある契約のいずれか一方の当事者が仲裁への付託を要請

3

議定書第三条3の適用上、

商事仲裁委員会とは、

지약의 당사자인 자 만이 진다.

(b) 제 1년도의 실시 기획은, 흥경 로트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들 위하여 통 연도의 실시 계획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일본국 정부에 제출 된다.

실시 계획에는 당해 연도 중에 대한 민국에 의한 조달이 어챙되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열거한다. 실시 계획은 양 정부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다 고

의정시 제 3조 1의 지약은 일본 원으로 통상의 상압상의

권차에 따라 제**권된다.**

2 의청서 제 3조 2의 제약 (이학 "가약"이라 함)와 실시에 관한 책임은 의청서 제 5조 1의 사춘단 (이학 "사춘단" 이탁 함) 또는 대한 민국 청부의 인가를 받은 자 및 의정서 제 3조 1의 일본국 국민 또는 일본국의 발인으로서,

세 3조 3의 책용상, 상사 종재 위원회막 함은, 계약의 어느 일방 당사자가 중재에의 회부를 요청한 경요에 있어서의 탁방 당사자가 거주하는 국가에 있는 상사 중재 기**관을** 말한다.